

2023학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생회 본선거 시행규칙

제1조 (선거 일정)

별첨 <2022학년도 학생회(총학, 단과대) 선거 일정표> 참조

제2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1.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입후보자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원 (소정 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각 1부.

다.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각서 (소정 양식) 1부.

마.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회원 100인 이상, 단과대학생회 선거 입후보 시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 (소정 양식) 1부.

바. 선거공약 및 상징문 1부.

사. 입후보자 소견문 1부 (한 조에 1부, A4용지 2장 내외)

아. 명함판 사진 각 1매.

자. 참관인 명단 1부.

(총·부학생회장은 8명, 단과대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2명, 온라인 선거 시 선거 운동본부 당 2명.)

차. 선거운동본부 공식 명칭 1부. 메인 컬러 2색

(RGB 및 컬러 코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단, 흰색과 검정색은 사용 금지)

2. 입후보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총·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본 대학교에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나.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 이상인 자.

다.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비대면 - 전자서명 방식 도입)

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바.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② 단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본 대학교에 4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단,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나.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5인 자.

다.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비대면 - 전자서명 방식 도입)

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대의원회 상임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자.

바. 본 절 제1장 제2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사. 임기가 연임되지 않는 자.

3.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제3조 (선거운동본부)

1.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부”라 칭한다)는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2.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선본부에서 중선관위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운동본부 구성)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내부 호선한다. 단, 선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 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 한하여 선본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중선관위에 보고한다.
2.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 발족과 동시에 재학증명서를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가. 회원 이외의 사람
 - 나. 현 정·부학생회장, 현 단대학생회장과 부회장, 집행부, 현 학부(과) 학생회장과 차기 학부(과) 학생회장으로 임명된 자
 - 다. 당해 중앙선관위원과 단대선관위원
 - 라. 나, 다 항의 직을 사퇴한 자는 사퇴 처리가 중선관위에서 확인된 직후부터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선거운동본부는 최초 선거운동본부원 모집 이후 선본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본부는 추가된 선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본부원은 중선관위의 심의 이후부터 선본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6.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사임한 경우, 지체없이 중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 단, 선본부원을 사임한 사람은 선거기간 종료 전까지 공직에 임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제5조 (선거운동본부 업무 및 의무)

1. 선거운동본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온라인 선거 시에는 개표참관인만 파견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선거 시행세칙 및 시행규칙, 중선관위 및 선본부장 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선거운동)

1. 모든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 사전선거운동이란 후보자 확정 공고 이전에 본 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홍보물의 배포, 부착 및 공식적인 정책선전, 공개

적인 선거공약 추천 행위, 공개 선거운동원 모집 및 각종 여론조사 등을 의미한다.

2. 모든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 공고 이후부터 가능하다.
3. 추천인 서명서는 중선관위에서 용지를 제작한다. 단, 추천인 서명 작업은 후보자의 등록 절차로 간주하여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한다.

제7조 (선거운동본부실 사용과 출입)

1. 선거운동본부실은 발족일로부터 선거운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2. 선거운동본부실의 장소는 후보자가 정하되, 중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경선의 경우에는 단과대 학생회실 사용을 금한다.
3.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선관위실 및 타 선거운동본부실을 출입할 수 없다.

제8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란 선거 운동복 착의, 홍보물 배포, 부착 및 기타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말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가. 중선관위가 주관하는 유세 외의 독자적인 집회. (단, 동아리실, 강의실, 학부 (과/전공) 학생회실에서의 유세는 개별 유세로 고려하여 제외)
나. 투표를 강요하는 질문이나 행위
다. 선거운동원 명단에 없는 자의 선거운동
라. 학우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위
마.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
3.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가. 학사일정 상 시험 기간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한다. 위반할 시, 주의를 생략 하고, 경고로 조치한다.
나.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시,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 운동복을 착용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본부는 메인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 선거 운동복을 사용 1일 전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 다. 선거운동본부원의 선거 운동복 환복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금한다.
- 라.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시, 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2-3인의 조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단, 후보자 및 선거운동 본부장은 예외로 둔다.
- 바.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아닌 투표 독려만 허용한다.
- 자.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의 대화 및 신체적 접촉을 금한다.

제9조 (오프라인 홍보물)

1. 모든 홍보물은 배경색으로 타 선거운동본부의 메인 컬러를 사용할 수 없다.
2. 모든 홍보물은 중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운동본부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본부는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명칭 사용,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를 할 수 없다.
3. 모든 홍보물에는 중선관위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 가. 모든 홍보물은 중선관위가 검토한 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 나. 모든 홍보물에는 적색의 중선관위 확인 도장을 찍는다.
 - 다. 배포용 홍보물은 배포 전에 중선관위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 라. 파손된 부착 홍보물은 즉시 회수하며, 중선관위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4. 모든 부착 홍보물은 부착 장소를 중선관위에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홍보물 부착 시 테이프, 스테플러, 타커만을 사용한다.
5. 가게시판 설치는 중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홍보물)

1. 온라인 홍보물의 형식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제한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홍보물(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내용을 중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은 배포할 수 없다.
3. 온라인으로 홍보물 배포 시, 다음 각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 가.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 중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홍보물이라는 내용을 중선관위에 정한 문구로 유권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홍보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해당 문구가 누락 되어서는 안 된다.
- 다.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문구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 라.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과 게시된 홍보물이 상이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SNS)

1.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홍보의 게시는 중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득한 계정만 허용한다. 단, 익명 및 비공개 계정의 게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선거운동본부원은 투표 시작 시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개인 SNS 계정으로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의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통해 선거를 독려할 수 있다.
 - 가. 온라인 홍보를 할 선거운동원은 명단과 함께 개인의 SNS 계정을 제출한다.
 - 나.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질의응답만을 허용한다.
3. 선거운동본부원은 선본부에서 우선 발행한 홍보물 외 선거 독려와 관련한 어떠한 홍보물도 독자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

제12조 (단체채팅방)

1. 각 학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한 카카오톡 홍보의 전권은 해당 학과의 학회장에게 있다.
2. 선본장이 아닌 정·부호보를 비롯한 제3자가 온라인 홍보와 관련하여 학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의 강요나 금품 전달이 있을 시, 주의를 생략하고, 경고로 처리한다.
3.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선거운동본부에게 있다.
 - 가. 중선관위의 심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나.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서 변경된 홍보물로 게시가 이루어질 경우
 - 다. 중선관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4.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단체채팅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시행한다.
 - 가. 유세 기간 전까지는 홍보물을 게시함에 있어 2회의 제한을 둔다.

나. 유세 및 투표 기간에는 홍보물을 게시할 때 1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둔다.
(단, 12시간의 기준은 선본장이 학회장에게 홍보물을 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단체채팅방에 참가하고 있는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때, 학우들의 민원이 있을 시, 단체채팅방에서의 홍보를 즉각 중단한다.

제13조 (유세)

1. 각 선거운동본부 당 유세 시간은 50분 이내로 제한하며, 이 시간은 후보자의 소견 발표 및 기타 홍보 행위를 포함한다.
2. 유세는 대면일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가. 각 선거운동본부는 유세 시작 10분 전에 유세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유세 장소는 중선관위에서 정한다.
3. 온라인 유세를 희망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가. 소견발표 영상은 유세 3일 전에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나. 소견발표 영상은 선거운동본부에서 제작하며, 교내 홈페이지의 광장 > 학생회 소식에서 배포한다.
다. 소견발표 영상은 유세 기간에만 게시,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비용)

1. 선거비용은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인 선거지원금과 중선관위에서 지급하는 일정액의 후보 지원금에 한한다. 단, 지원금은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선거운동본부는 상업적인 장소에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3.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결산 내역을 중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5조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는 투표 2일 전까지 중선관위에서 작성 및 보관한다.
2. 선거인 명부는 수정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선관위에서 1부, 학생복지팀에

서 1부 소지한다.

3. 유권자는 투표 전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4.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의 누락, 오기 또는 무자격자가 등재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선거구에서는 이의가 인정된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투표 당일 선거인 명부의 열람은 중선거구만 가능하며, 타인 열람은 금한다.
6. 선거인 명부는 투표 종료 후, 중선거구실로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투표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제16조 (참관인)

1. 참관인은 후보 등록 당시의 것을 우선으로 하되, 변경 시 선거운동본부는 이를 사전에 중선거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선거 당일 참관인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배석하여야 하며,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은 경우, 투표의 전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 단, 자리의 배석 위치는 사전에 각 선본부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3. 참관인은 투표 당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유권자가 사용하는 모든 투표용지의 지정된 곳에 날인 하여야 한다.
4. 참관인은 중선거구의 요구 시, 학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참관인은 첫날 투표 시작 전에 선거인 명부의 작성일자를 확인하며, 당일의 투표가 완료되면 중선거구와 함께 선거구실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밀봉한다.
6. 참관인은 마지막 날 투표 시작 전에 전날의 밀봉 상태를 확인한다. 당일의 투표가 완료되면 중선거구위원과 함께 지정된 개표장소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제17조 (투표장소)

1. 투표장소는 투표일 5일 전에 중선거구에서 지정하며, 투표장소의 변경 신청은 투

표일 4일 전에 한한다. 이후, 투표장소의 변경은 불허한다.

2. 투표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투표행위를 할 수 없다.
3. 투표장소에는 중선거위가 지정한 장소, 지정한 홍보물을 제외한 모든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으며, 참관인을 제외한 선본부원이 상주를 금한다.
4. 단, 온라인 선거 시에는 별도의 투표장소를 규정하지 않는다.

제18조 (투표 시간)

1. 투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다.
2. 오프라인 선거 시에는 마감 시간이 지났더라도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 내 대기 중인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다. 단, 투표소 내 대기 중인 사람이라 함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 (기표 절차)

1. 기표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
 - 가. 유권자는 학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및 인장을 지참하여 투표장 입장 시에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 한다.
 - 나.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중선거위원과 참관인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 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2. 단, 온라인 선거 시, 유권자는 샘플포털시스템 로그인 후, 설문조사를 통해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20조 (개표)

1. 투표가 끝나는 즉시 중선거위원과 참관인은 지정된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개표 및 집계를 시작한다.
2. 개표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 6인 이하, 중앙선거위원회 12인 이하 및 언론사 2인 이하 입회하여 진행한다. 단, 단대선거 개표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의 참관인 2인 이하, 단대선거위원회 2인 이하, 중앙선거위원회 2인 이하 및 언론사 2인 이하 입

회한다.

3. 개표순서는 아래와 같다.

- 가. 중선거관위원장의 집계사무개시 선언
- 나. 중선거관위원과 각 참관인의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 집계
- 다. 중선거관위원과 각 참관인의 투표함 개봉 및 각 선본부가 타 선본부의 투표용지 분류
- 라. 모아진 투표용지를 중선거관위원과 각 참관인이 집계
- 마. 중선거관위원의 무효표 집계
- 바. 총 투표자 수, 유효표 및 무효표 수, 각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4. 단, 온라인 선거 시, 온라인 투표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 (경고)

- 1. 다음의 경우, 중선거관위는 회의를 통하여 경고를 결정하며, 위반 근거와 결정 내용을 후보자에게 제시한 후, 경고를 주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 가. 총학생회 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한 경우
 - 나. 본 시행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선거관위원장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주의 내용을 선거운동본부에게 전달한다.
- 3. 주의에 대하여 선거운동본부 측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고로 처리한다.
 - 단, 주의 누적 시 더 이상의 주의 없이 경고로 조치한다.

제22조 (입후보 자격 박탈)

- 1. 세 차례의 경고 발생 시, 중선거관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2. 이 경우, 중선거관위는 세 차례의 경고 내용 및 각각에 대한 근거 자료, 자격 박탈과 관련한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23조 (투표일의 연기)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선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중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일을 지연된 시간에서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 종료 작업)

1. 각 선거운동본부는 당선 확정 3일 이내에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홍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당선 확정 3일 이내에 예산 집행 내역을 결산하여 공고하고, 중선관위에서 지급한 후보 지원금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중선관위에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다음날 정오까지 선거운동본부실을 본래의 상태로 비워야 한다.

제25조 (부칙)

1.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변경 사항은 중선관위의 회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2. 단대선관위가 총학생회 회칙,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및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선관위가 이를 대신한다.